

대전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23454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10. 16.

판결 선고 2024. 11.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2017. 9. 25.자로 C이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C의 처인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7. 9. 25.자로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C은 2018. 4. 2. 사망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전자정법원 2018느단927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8. 7. 23.자로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무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D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 부분은 C에 의하여 위조되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또는 D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연대보증책임을 성립 여부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이 원칙이고,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툼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C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장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약정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의 사망 후 피고가 원고 또는 D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도영